

# 이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

1996. 12. 21

내무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6년 12월 2일 이천시장
- 나. 회부일자 : 1996년 12월 6일
- 다. 상정일자 : 제9회 이천시의회(정기회)
  - 제2차(96. 12. 20) 내무위원회 상정
 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한기영)

### 가. 제안이유

-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, 위촉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1) 지도위원은 시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,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, 사회복지단체의 장, 당해 읍·면·동장,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함(안 제2조)
- 2)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 등을 위하여 시, 읍·면·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전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안봉환)

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육성기반을 조성하고, 민간 참여에 의한 청소년 육성을 조장하고자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및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·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등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없 음